

##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용자 사업 공고

『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』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「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용자」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1.

경기도지사

□ 사업개요 :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용자 및 이차보전

□ 신청기간 : '26. 1. 1. ~ 12. 31. (연중 수시)

□ 용자대상 조건

○ (용자대상)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

1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,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2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3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
4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
5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
6.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

※ 단, 용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, 사회적경제조직 지위,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

☞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

○ (용자 제외 대상)

1.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2.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골프장, 무도장)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
3. 휴·폐업 중인 사업자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5. 국세, 지방세(도세·시군세)가 체납 중인 사업자
  - ※ ‘체납’의 범위 : ‘징수유예’는 ‘체납’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
6.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
7. 기타 용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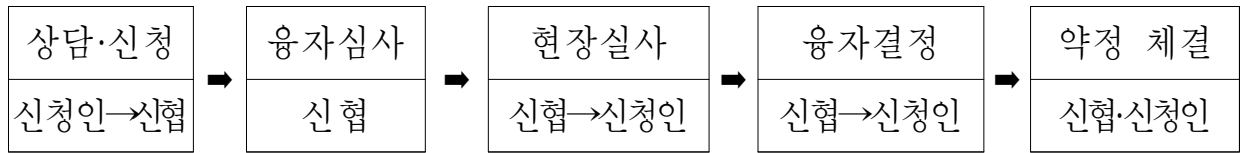
□ 용자 조건

- 용자규모 : 200억원 (지역신협 자금)
  - \* (상품명) 신협 상생협력대출금
- 용자한도 :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(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)
  - 최종 대출금액은 용자 실행기관(지역신협)의 심사 결과에 의함
- 용자기간 : 최대 15년 이내 (단, 신용대출은 10년 이내)
- 자금용도 : 시설자금, 운전자금
- 용자금리 : 변동금리 (기준금리 + 가산금리)
  - \* (기준금리) 1년 만기 신탁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
  - \* (가산금리) 신용 1.6%, 담보 1.2%
- 이차보전 :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.5% (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)

사회적가치평가 점수	이차보전율 (신용·담보 동일)	비 고
5점 미만	-	지원기간 5년 (경기도 지원)
5점 이상 ~ 10점 미만	1.5%	
10점 이상 ~ 15점 미만	2.0%	
15점 이상	2.5%	

- 상환방식 : 일시상환, 분할상환
  - \* 신용대출 :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\* 담보대출 :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

□ **용자 절차 : 용자 신청 및 용자 결정**



- ① **최초 상담신청**은 ‘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용자 상담 신청서’(별첨3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(이메일주소 : socialeconomy@cu.co.kr)
- ② **용자신청**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접수는 ‘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’을 통해 진행
- \* 용자신청 기본서류(별첨1) 외 필요서류는 “신협” 여신규정에 따름

□ **문의처** :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☎ 042-720-1293  
 (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, 신용협동조합중앙회)

□ **기타사항**

-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
- 용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용자신청을 제한함

※ 경기도 관내 용자 신청 지정 지역신탁 목록

연번	신탁명	주소지	연락처
1	일산	고양시 강석로 153	031-904-9900
2	월당	고양시 호국로 786	031-965-4748
3	김포제일	김포시 애기봉로 854	031-988-3110
4	양촌	김포시 양곡1로 47	031-981-3255
5	부천소망	부천시 경인옛로 110	032-343-0247
6	주민	성남시 수정로 115-1	031-755-4968
7	화서	수원시 동말로 55	031-244-5771
8	북수원	수원시 장안로 97	031-255-9707
9	동수원	수원시 중부대로 130	031-212-5900
10	미소	시흥시 정왕대로 174	031-497-5051
11	경기시흥	시흥시 은계변영길 1	031-312-6623
12	단원	안산시 광덕4로 234	031-492-0100
13	상록	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59	031-487-9559
14	안산중앙	안산시 광덕2로 185-20	031-411-5000
15	새안양	안양시 장내로120번길 22	031-446-1101
16	세모	안성시 종합운동장로 129-1	031-8052-0127
17	하나	양주시 화합로 1349	031-857-9506
18	오산	오산시 성호대로 124	031-375-3751
19	수지	용인시 문정로7번길 8	031-262-6801
20	의왕	의왕시 신장승길 30	031-461-6014
21	신우	의정부시 신흥로 232	031-875-0751
22	믿음	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55	06-856-5923
23	이천	이천시 영창로173번길 4	031-635-8561
24	경기제일	평택시 안현로 381	031-681-1180
25	포천제일	포천시 구절초로 28	031-535-3126
26	화성우리	화성시 평3길 9	031-352-5811
27	화성한마음	화성시 3.1만세로 45-3	031-358-5311

[별첨1]

□ 용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

구분	내용
대출약정을 위한 필수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관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- 법인등기부등본</li> <li>-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(주주총회 의사록)</li> </ul>
기업 심사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무제표(3개년)</li> <li>- 사업계획서</li> <li>- 대표자 이력서</li> <li>- 임직원 명부, 유급근로자 명부</li> <li>- 조합원(주주) 명부</li> <li>- 매출액 확인 자료</li> <li>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원</li> <li>- 금융거래확인서</li> </ul>
기타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</li> <li>-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</li> </ul>

[별첨2]

<신협이 사회적가치평가표 현황>

<b>1. (사명의 구체성)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명의 구체성</b>		해당여부	
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사명이 존재(선언문, 정관, 규약 등)			
② 명문화된 사명서는 없으나, 추구하는 목적이 구성원 간의 공유되어 있음			
③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및 사명이 없음			
<b>2. (사회적가치 지향성) 주된 사업 활동에서 지향하는 가치 (복수선택 가능)</b>		해당여부	
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(노동권 보장, 근로조건 향상, 양극화 완화 등)	⑧ 사회적 차별의 극복(여성, 다문화, 장애인 등)		
②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	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		
③ 사회서비스 제공(취약계층에 대한 돌봄, 교육, 의료 등)	⑩ 기업 행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		
④ 적정 주거의 공급	⑪ 윤리적인 생산과 유통		
⑤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	⑫ 지역사회와의 상생, 협력		
⑥ 전통의 보존	⑬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혁신성		
⑦ 환경 문제의 개선	⑭ 기존 기업들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		
<b>3. (평가체계) 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(복수선택 가능)</b>		해당여부	
①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보유			
② 평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유			
③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주체(평가위원, 자문위원 등) 보유			
<b>4. (이윤배분) 이윤의 처분 방법</b>		해당여부	
① 당기순이익의 2/3이상을 이용고배당, 재투자, 잉여금적립 등에 사용			
② 당기순이익의 1/3~2/3 미만을 이용고배당, 재투자, 잉여금적립 등 사용			
③ 당기순이익의 2/3 이상을 투자자에 배당			
<b>5. (집합적 소유구조) 자본금의 구성 (복수선택 가능)</b>		해당여부	
① 최대 출자자의 지분이 20%미만			
② 상위 3명(기업, 단체 등 포함)의 출자 지분이 30% 미만			
③ 3가지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			
<b>6. (민주적 운영) 이사회외의 구성 및 운영(복수선택 가능)</b>		해당여부	
① 지난 1년 간 3회 이상 이사회 개최			
② 이용자, 직원, 조합원 및 출자자,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			
③ 직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			
<b>7. (수익의 배분) 상근직의 임금 수준</b>		해당여부	
① 상위 20%와 하위 20%의 소득 배율이 2 미만			
② 상위 20%와 하위 20%의 소득 배율이 2 이상 3 미만 이상			
③ 상위 20%와 하위 20%의 소득 배율이 3 이상			
<b>8. (협력 수준) 소속된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협의체의 수</b>		해당여부	
① 3개 이상			
② 1~2개			
③ 없음			
<b>9. (경제적가치) 재무 현황 수준 (복수선택 가능)</b>		해당여부	
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 20% 이상	③ 최근 2년 연속 흑자 실현		
② 자본 대비 부채비율 100% 이하	④ 중장기(3개년 이상) 재무계획 수립 여부		
<b>10. 일반현황 (단답형) 설립연월을 제외하고 신청일 전월기준으로 작성</b>			
자산	( )	조합원수	( )
설립연월	( )	직원수	( )
<b>11. 주요사업모델 (기술형)</b>			
( )			
<b>12. 특이사항 (기술형)</b>			
( )			
<b>13. 기업 형태에 따른 분류(다음 중 하나를 선택)</b> ( )			
① 일반협동조합	② 사회적협동조합	③ 상법상 회사	④ 민법상 법인
⑤ 비영리민간단체	⑥ 영농(어)조합법인	⑦ 사회복지법인	⑧ 농(어)업회사법인
⑨ 기타 법인 단체			
<b>14.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따른 분류(다음 중 하나를 선택)</b> ( )			
① 사회적기업	② 예비사회적기업	③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	④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
⑤ 마을기업	⑥ 자활기업	⑦ 기타	

